

파주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2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8년 11월 11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

1. 제안이유

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시민과장과 사회진흥
업무담당주사로 규정한 것을 개혁이 행정 및 국민생활 전반을 대상으
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간
사와 서기를 총무과장과 시정업무담당주사로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총무과장과 시정업무
담당주사로 함.(안제7조)

파주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7조제2항중 “시민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하고 “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”를 “시정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	비 고
제7조(간사, 서기) ① (생략) ② 간사는 <u>시민과장이</u> 서기는 <u>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</u> 가 된다.	제7조(간사, 서기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 <u>총무과장</u> ----- <u>시정업무담당주사</u> -----.	